

# 보건의료융합대학원 학사운영 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대학원학칙」에 따라 보건의료융합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과정)**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(이하 “석사과정”이라 한다)과 연구 과정을 둔다.

② 공개강좌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## 제2장 입학 및 편입학

**제3조(입학정원)** ① 각 과정의 학과(전공)별 입학정원은 학기마다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(이하 “학사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정한다.

**제4조(입학 지원 서류)** ① 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가 입학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대학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
2.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
3. 그 밖에 필요한 서류

② 연구 과정에 입학하려는 자가 입학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제4조 제1항에 준한다.

**제5조(입학 전형방법)**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시행하되, 평가내용, 배점, 합격 기준 등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6조(편입학)** ① 학위과정의 편입학 학기별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학위과정	편입학기	지 원 자 격		비고
		정규등록 학기 수	이수학점	
석사과정	2	1학기 이상	6학점 이상	
	3	2학기 이상	12학점 이상	

② 편입학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편입학원서
2.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
3. 편입 전 대학원의 재학증명서(수료나 학위증명서)와 성적증명서

③ 편입학전형은 내신과 면접시험으로 하되, 평가내용, 배점, 합격 기준 등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④ 편입학 전 대학원의 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전과 및 전공 변경)** ① 전과 및 전공 변경은 「대학원학칙」 제10조의2에 따라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나 전공의 해당 차수에 재학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전과 및 전공 변경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전입 학과나 전입 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전공과목 이수로 인정한다.

③ 전과 및 전공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전과 및 전공 변경 신청서
2. 전공과목 인정서
3. 성적표

### 제3장 등록, 교과과정 이수 및 학점취득

제8조(등록 학기 수) 과정별 등록 학기 수는 다음과 같다.

1. 학위과정 : 5학기
2. 연구과정 : 2학기

제9조(교과과정의 편성·변경) ① 교과과정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편성하되,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교과목의 이수학점단위는 과목마다 2학점으로 한다.

③ 편성된 교과과정은 2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교과목 개설) ① 교과목은 편성된 교과목 중에서 선정하여 개설하되, 학기마다 그 수는 3 과목에서 5과목 이내로 한다.

② 주임교수는 교과목 개설 학기 바로 전 학기가 끝나기 전에 개설 교과목목록과 강의담당 교수명단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.

③ 강의담당 교수는 교과목 개설 학기 바로 전 학기가 끝나기 전에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하며, 개강 첫 시간에 이를 학생들에게 배부해야 한다.

제11조(학점) ① 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.

1. 졸업논문제 신청자 : 24학점 이상
2. 학위청구사례연구보고서 제출예정자 : 28학점
3. 학점이수제 : 28학점 (공통교과목: 18학점, 전공교과목:10학점)

② 학점계산은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다만, 실험이나 실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

③ 협약 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내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④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취소할 수 있다.

⑤ 졸업논문제, 학위청구사례연구보고서 제출, 학점이수제 선택은 2차 학기 초에 하며 선택내용을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강 신청) ① 수강하려는 자는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에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학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수강 신청과목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변경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.

## 제4장 학위청구 논문·사례연구보고서의 지도

제13조(학위청구) ① 학위청구는 논문이나 사례연구보고서 또는 학점 이수로 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 한다)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, 학위청구사례 연구보고서(이하 “보고서”라 한다)에도 그대로 적용한다.

제14조(지도교수의 위촉신청과 배정) ① 논문지도 교수(이하 “지도교수”라 한다)를 배정받으려는 자는 2차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지도교수의 배정은 그 위촉신청서에 대한 주임교수의 검토결과보고서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촉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
제15조(지도교수의 자격·직무) ① 지도교수는 교내의 부교수 이상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대학의 교수를 공동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논문작성과정을 지도해야 한다.

제16조(논문작성계획서) ① 논문작성계획서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4차 학기 중에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는 논문작성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.

## 제5장 종합시험

제17조(종합시험 과목과 방법) ①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과목 중 3과목으로 한다.

② 종합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.

제18조(종합시험 시기)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하며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.

제19조(종합시험 응시자격)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2.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

## 제6장 논문의 작성, 공개발표 및 심사

제20조(논문작성) ① 논문은 한글로 쓰고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외국어로 쓴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.

② 논문체제구성과 논문작성방법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.

제21조(논문공개발표) ① 논문공개발표는 5차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등이 참여한 장소에서 시행한다.

② 논문공개발표를 하려는 자는 발표 전에 논문공개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도교수는 논문공개발표 결과보고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.

제22조(논문심사의 신청과 일정) ① 논문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와 논문 3부(보고서는 2부)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논문심사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학점을 이수한 자

## 2-2-11 ~ 4 보건의료융합대학원 학사운영 규정

2. 「대학원학칙」제29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
③ 논문심사신청 시기는 5월과 11월 연 2회로 한다.

④ 주임교수는 논문심사 일정을 대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⑤ 논문은 과정 수수료 후 3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그 시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**제23조 (논문심사위원의 구성)** ① 논문심사위원은 3인(보고서 심사위원은 2인)으로 구성한다.

② 보고서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임교수와 지도교수로 한다.

**제24조 (논문심사 과정과 방법)** ① 논문심사는 3회(보고서심사는 2회)에 걸쳐 원고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하되, 발표와 질의응답 방법으로 실시한다.

② 논문심사를 받는 자는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고할 목적으로 인용한 참고문헌이나 논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.

③ 논문심사는 정한 기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.

**제25조(논문의 합격 여부 판정)** ① 논문심사와 공개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전원의 참석 하에 심사위원 2인 이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.

② 논문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자가 논문심사를 다시 받으려고 할 때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신청과정과 논문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.

③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한 논문합격은 취소할 수 있다.

**제26조(논문심사결과보고)**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.

**제27조(인쇄.제본논문의 제출)**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인쇄.제본한 논문 2부를 교학팀에 제출하되, 모두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과 날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.

## 제7장 학위수여 및 학위 수여취소

**제28조(학위취득자격과 학위 수여)** ① 학위취득자격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과 같다.

1.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

2. 24학점 이상(보고서 제출자나 학점이수제 신청자는 28학점 이상)을 취득하고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3.0이상인 자

3.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나 학점이수제를 신청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

② 학위취득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.

**제29조(학위 수여취소)** 학위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11조제4항에 따라 학점이 취소되었을 경우

2. 대학원학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

3. 제25조제3항에 따라 논문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2025년 3월 1일 이전 경영행정창업대학원 보건의료과학과에 입학한 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**제3조(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** 2025년 3월 1일 이전 경영행정창업대학원 보건의료과학과 재적생은 보건의료융합대학원 명으로 학위를 취득한다. 다만, 본인이 원할 경우 경영행정창업대학원 명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